

2012년도 일반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대상부서 : 기술지원처, 차량운영처
2. 감사범위 : 2010. 6 ~ 2012. 9 까지 수행업무 전반
3. 감사일정 및 인원
 - 가. 감사기간 : 2012. 11. 5 ~ 11. 23 (15일)
 - 나. 감 사 인 : 감사팀장 외 4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행 정 상 조 치						재정상 조치		비 고
계	주의	경고	시정	교육	개선	계	회수	
12건	3	1	1	1	6	1 (253)	1 (253)	수범 2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 번호	내 용	조치사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르면 매월 지급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는 용역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으나,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기성검사자를 지정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기성검사시에는 감독과 검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전기설비팀에서는 용역의 과업이 적정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기성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감독업무에 대한	주의1	

	<p>○ 그런데 전기설비팀에서 실시중인 전등전열 유지관리용역 등 4건의 용역에 대한 기성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기성검사 누락 또는 지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겹직 등 용역 기성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p>	<p>견제기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기성검사시에는 검사자를 감독보다 상위 직급자로 별도 지정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p>	
2	<p>○ 토목건축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된 1-4공구 터널,역사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하자검사용역을 통합발주하여 2012년 4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하였다.</p> <p>○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별') 제6조에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목적은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객관적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발견시 이에대해 적절한 보수 보강방법 및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전 시공사로 하여금 적정 보수토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므로,</p> <p>○ 상기 '1-4공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하자검사 용역' 을 추진하면서 정밀점검결과 안전저해요인이 있을시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4공구의 하자담보책임 만료일인 2012년 8월 8일 이전에 용역상대자로부터 정밀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 한다.</p> <p>○ 그런데 토목건축팀은 1-4공구의 정밀점검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인 8월 8일 이후까지 실시(2012. 6. 29 ~ 8. 21)하였고, 정밀점검보고서를 8월 24일에 제출받는 등 용역관리를 소홀히 하였다.</p>	<p>① 토목건축팀에서는 향후 용역추진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에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 정밀점검보고서 제출일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p>	경고1
3	<p>《옥동기지 조경공사 하자보증설정 누락》</p> <p>○ 토목건축팀(구 시설1팀)은 2011년 당시 옥동기지 관리업무 담당하면서 녹색기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p>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2항 3호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조경공사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규정 시행내규</p>	<p>① 토목건축팀, 자산회계팀, 신호통신팀은 공사 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하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p> <p>② 현 기지관리부서인 전기설비팀 및 차량팀은</p>	주의3

	<p>제196조에 따라 공사발주부서는 계약의뢰시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토목건축팀에서는 옥동기지의 지반이 척박하고 식재가 자주 고사하는 상황임에도 조경공사를 위한 설계서(시방서)에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발주시에도 하자보증을 요청하지 않아 상기 2건의 조경공사 모두 하자보증 설정이 누락되었으며,</p> <p>○ 자산회계팀은 발주부서에서 하자보증 설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라 하자보증을 설정하여 발주부서에서 하자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증 설정을 누락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p> <p>《하자만료검사 업무 소홀》</p>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에 따르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p> <p>○ 그런데 신호통신팀에서는 ‘화재수신반 연동 CCTV 설치공사 등 4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6 ~ 9일 지연하여 실시하였고, 1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13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p>	<p>추후 조경공사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4	<p>○ 신호통신팀(구 신호통신2팀)에서는 동절기 폭설시 용산·옥동기지 입출고선 선로전환장치 결빙으로 인한 열차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응설장치 케이블 포설 및 제어함 기초설치공사’를 (주)0000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0.12.10일부터 12.20일까지 시행하였다.</p> <p>○ 국토해양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p> <p>○ 그런데 신호통신팀에서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p>	<p>① 신호통신팀에서는 원가계산 제경비 적용소홀로 인하여 초과지출된 금액 253,000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p>	시정1	회수1

	<p>인 ‘융설장치 케이블 포설 및 제어함 기초설치 공사’ 를 발주하면서 원가계산시 국민연금보험료 179,860원, 건강보험료 110,2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23원을 적용하는 등 원가계산 제경비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였다.</p> <p>○ 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298,000원이 높게 발주 되었으며, 낙찰을 적용시 253,000원이 초과지출 되었다.</p>		
5	<p>1> 착공시 현장대리인 자격증명 검토소홀</p> <p>○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1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에 의거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p> <p>○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내규 제207조에서도 공사 발주부서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를 검토확인 후 계약서에 정한 착공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p> <p>○ 따라서 공사발주부서의 감독은 현장대리인의 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착공계에 반드시 첨부 확인하여 당해공사가 적정기술자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전기설비팀에서 발주한 ‘상무역 E/S 스텝체인 교체수리 등 5건’ 과 토목건축팀에서 발주한 ‘정거장시설물 보완공사’ 의 경우 착공계에 현장대리인의 자격증명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공사감독은 착공계 서류를 보완조치하지 않는 등 착공시 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였다.</p> <p>2>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소홀</p> <p>○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공사</p>	<p>① 전기설비팀, 토목건축팀에서는 공사에 따른 착공 및 준공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주의2

	<p>에 대하여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사용영수증은 정당한 영수증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때에는 감액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전기설비팀은 2012.6.14일 0000와 계약한 '지하강체전차선로 지지애자 세척공사'의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음에도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치 않고 준공처리 하였고, 2012. 6.20일 (주)0000와 계약한 '송정리역 대합실 공조기 냉수 코일 교체'의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확인치 않고 준공처리 하였다.</p> <p>○ 또한 토목건축팀에서는 2011.5.13일 0000(주)와 계약한 '양동시장역 스크린도어설치 부대공사'의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확인치 않고 준공처리 하였다.</p>		
6	<p>○ 전기설비팀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의 고장발생시 신속한 보수조치로 승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1호선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용역원을 고급기능사 1명, 중급기능사 3명, 초급기능사 1명을 배치토록하고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용역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p> <p>○ 따라서 용역감독자는 착수계 접수시 용역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용역원의 적정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당해용역이 적정인력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용역감독자는 상기용역의 착수계 접수시 계약상대자가 관련 용역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p>	<p>① 전기설비팀에서는 용역의 과업이 적정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원의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사례가 없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p>	교육1

	<p>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지않고 승강기 자체점검자 보수교육 수료증으로 대체하여 해당 용역원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적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움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용역원의 기술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p>			
7	<p>○ 전기설비팀에서는 변전실의 이례상황을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용산차량기지외 7개 변전소에 CCTV감시설비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카메라 및 영상전송용 서버는 변전실에 설치하고 영상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설비(DVR 1대, 운용자PC 1대, 모니터 2대)는 기술관제부 전력설비관제실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p> <p>○ 또한 전기설비팀은 전기설비 관리내규 별표[점검 및 검사주기표] 에 의거 본사 전력설비관제실에 설치된 감시설비(DVR 1대, 운용자PC 1대, 모니터2대)를 분기당 1회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장 시에는 전기설비팀의 수선유지비를 집행하여 수리까지 대행하고 있다.(2012.9.6일 전력설비관제실 감시용 PC고장으로 전기설비팀에서 수선유지비를 집행하여 수리함)</p> <p>○ 재산관리규정 제6조(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지정)에 따르면 본사 및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으므로,</p> <p>○ 변전소 CCTV의 영상 감시설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관제부로 관리전환 후 점검·보수토록 하여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p>	<p>①전기설비팀에서는 변전실 CCTV 감시설비(DVR 1대, 운용자 PC 1대, 모니터 2대)를 기술관제부로 관리전환하여 설비(재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1	
8	<p>○ 신호·통신·전자설비는 열차의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설비로서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7조 관련 별표4(분장사무표)에 의거 신호통신팀은 신호·통신·전자설비의 장애를 통계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p> <p>○ 그런데 현재 신호통신팀에서는 분기 1회 분야별 1~2건의 주요장애에 대하여 분소로부터 보고만 받고 있을 뿐 팀에서는 분기별 관련설비의 전체장애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있고, 연도말에 이르러서야 1년간 전체 장애건에 대하여 1회의 통계분석만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분석 및 대처</p>	<p>① 신호통신팀에서는 신호·통신·전자설비의 전체 장애건수에 대하여 정기적(분기별 등)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장애건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	

	<p>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 <p>○ 설비의 장애를 통계분석하는 목적은 수시로 발생하는 장애건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고 신속히 보완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장애 통계분석을 연1회가 아닌 정기적(분기별 등)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장애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p>			
9	<p>○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에 따라 2012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09년 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토록 하였다.</p> <p>○ 이에따라 신호통신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세부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본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CCTV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보다 광의의 지침임에도 기존의 예규를 존치하고 있어 지침과 예규간 용어불합치로 인한 혼선초래, 2중관리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p>	<p>① 기존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를 폐지하고, 기 수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세부지침’으로 통합·보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1	
10	<p>○ 승무팀에서는 운전업무관리내규 제39조~제46조에 따라 매년 1회 으뜸기관사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전동차기술 및 관련규정 이론(1차), 시운전에서 고장처리 능력(2차), 본선 운전실기 능력(3차)를 평가 후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 있다.</p> <p>○ 으뜸기관사를 선정하는 목적은 기관사의 운전기량 및 이례상황 발생 시 조치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참가자 및 입상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및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현재 으뜸기관사의 평가에 있어 이론평가(1차)를 제외한 고장처리능력 평가(2차) 및 본선 운전실기능력 평가(3차)의 평가표를 보면 평가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평가 착안사항이 없어 평가위원</p>	<p>① 승무팀에서는 으뜸기관사를 선발하는 취지를 살려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장처리 평가표 및 운전기량 평가표의 평가내용을 구체화 하고, 배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배점기준을 계량화 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1	

	<p>이 자의적으로 배점할 소지가 높으며, 평가표에 최대 배점 기준만을 제시함에 따라 동일 평가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별로 배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소지 등 평가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p>			
11	<p>○ 승무팀에서 운용·관리 중인 모의운전연습기는 전산 및 Network 분야의 전문기술이 집약된 외국산 제품으로 운용·관리에 전문기술력이 요구되나 잦은 고장과 주요부품의 단종으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으며,</p> <p>※ 2010.10.19일 제작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견적 결과 7.5억원 확인</p> <p>○ 2012.3.30일부터는 장비의 고장이 심화되어 시공사에 보수 의뢰를 하였으나 보수비용 과다요구로 수리하지 못하고, 2012.4.30일부터 기술개발팀의 자체기술력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기본기능이 복구될 예정에 있다</p> <p>○ 재산관리규정 제6조 2항에 따르면 재산의 관리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8조에는 '재산의 관리자는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p> <p>○ 모의운전연습기 운용관리 부서인 승무팀에서는 복구될 예정인 모의운전연습기가 지속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p>	<p>① 승무팀에서는 기술개발팀의 협조를 받아 모의운전연습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관리계획(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주기, 이력관리 등)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1	
12	<p>○ 기술개발팀은 2011.3.26일 기술부서의 미 확보된 회로도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Altium PCB Designer)를 구매하여 각종 PCB설계도를 작성(2011년 18종, 2012년 24종)하여 현업부서에 제공하였으며 PCB 자체제작 등에 적극 활용 중에 있다.</p> <p>○ 그런데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Altium PCB Designer) 구매시 network 버전으로 구입하고도 팀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기술부서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 할 필요가 있다.</p>	<p>① 기술개발팀에서는 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기술부서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network로 구축하고 사용방법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1	
1	<p>○ 상기자는 토목건축 용산분소 관리책임자인 분소장으로서 매사 창의적인 생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p>		수범	

	<p>○ 특히 직원들의 기술력 향상과 공사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여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였다.</p> <p>1> 역사 안내표지판 디자인개선 자체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리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역사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시인성이 높게 개선하였으며, - 1호선 전역사 안내표지판(달대형, 벽부형) 전체를 개선된 디자인으로 자체 제작 및 교체하여 약 76,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p>2> 레일온도 자동측정 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일온도 측정은 흑서기 레일의 장출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궤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요한 업무로서, - 현장에서 점검자가 수동으로 레일온도를 측정하던 기존 방법을 적외선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24시간 자동측정 할 수 있도록 ‘레일온도 자동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였음 <p>3> 부패 목침목 자체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차량기지에 부설되어있는 목침목이 부패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 따라 부패된 목침목을 자체로 교환(2012년 12개 교환)하여 약 1,779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2	<p>○ 상기자는 신호통신팀의 보안 및 시설공사 담당자로서 통신분야의 시설공사 설계·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 만 아니라,</p> <p>○ 특히 공사의 수익창출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여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였다.</p> <p>1> 통신기계실 냉방기 무상기증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계실 냉방기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가 통신사업자(KT, SKT, LGU+, 한국전파기지국)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구간 13개역(소태~상무) 통신기계실에 냉방기 총 13대를 3년에 걸쳐 무상기증 형식으로 기부받기로 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어 약 91,000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 2012년도에 1단계 물량 21,000천원 상당의 냉방기 3대를 화정역, 돌고개역, 양동시장역 통신기계실에 설치 완료하였음 <p>2> 개인영상정보 관리업무의 성실한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확고히 하였을 뿐 만 아니라, - 각 역사 영상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영상정보 담당자들에게 자체교육 실시 및 관리기준을 적극 해설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의 관리실태 점검에 적극대처 하였음 	수범	